

조경공사업

■ 업무내용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 ·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 개량하는 공사

EX: 수목원 · 공원 · 숲 · 생태공원 · 정원 등의 조성공사

■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	개인
5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2. 기술능력

기술자격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4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

3. 공제조합

2025.05.13 기준

업종	1좌당	자본금	C등급 이상	D등급
조경공사업	1,555,600원	5억원	117좌 (182,005,200원)	131좌 (203,783,600원)

※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의 2배를 출자해야 합니다

4. 시설 · 장비

사무실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시 · 도 안에 있어야 한다.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등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등록 불가

신규등록 소요기간

평균 30~45일 이내 소요